

##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본인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약관을 포함한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귀중  
본인

년 월 일

명판	법인인감

주 소: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 1 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 표시한다)

여신과목(여신종류)	거래구분	□ 한도거래	□ 개별거래						
여신(한도)금액	금								
여신개시일	년 월 일	여신기간만료일	년 월 일(1회전기간: 개월)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지연배상금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p>-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에 따른다. -지연배상금률(연체이자율)</p> <table><thead><tr><th>연체기간</th><th>지연배상금률(연체이자율)</th></tr></thead><tbody><tr><td>90일 이하</td><td>연 ( )%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td></tr><tr><td>90일 초과</td><td>연 ( )%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td></tr></tbody></table> <p>*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계단 방식)을 적용한다.</p>			연체기간	지연배상금률(연체이자율)	90일 이하	연 ( )%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	90일 초과	연 ( )%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
연체기간	지연배상금률(연체이자율)								
90일 이하	연 ( )%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								
90일 초과	연 ( )%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								
여신실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한다.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한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한다.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상환한다. <input type="checkbox"/> 최종의 대출실행후 최초 도래하는 대출개시해당일로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상환한다.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는 여신개시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에 선지급한다. <input type="checkbox"/>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한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한다. <input type="checkbox"/>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한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								
상계특약	적립신탁대출에 대하여 관련 월적립금이 계속하여 4회이상 연체되는 경우 여신기간 만료일 이전이더라도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한다.								

### 제 2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차용금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③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제 3 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여신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한다.
-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제 4 조 감액·정지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금융사정의 변동·채권보전상 필요있을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 1 조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조과금액은 곧 갚기로 한다.

#### 제 5 조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

- ①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 기본계좌 및 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한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 ②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은행은 재량에 따라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곧 갚기로 한다.
- ④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이 경우 한도 초과한 금액은 곧 갚기로 한다.
- ⑤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한다.
- ⑥ 당좌대출의 경우, 제4조에 의한 감액·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한다.
- ⑦ 당좌대출의 경우, 은행은 재량에 따라 본인이 여신기간만료일 전에 발행한 어음·수표를 여신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된다.

#### 제 6 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한도거래 및 외화대출의 경우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 제 7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한다.

#### 제 8 조 상환통화 및 환율

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 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한다.

#### 제 9 조 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 제 10 조 담보권 설정

- ①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은 아래에 표시한 예금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를 인도한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을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친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이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한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다.

####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별	계좌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금액 (계약액)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 제 11 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채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한다. 그 밖에 채무구조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불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본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20 .
부채비율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비율	%	%	%	%	%	%
( )비율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한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 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한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제 12 조 (자료의 제출)

-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한다.
1. 매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  
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 (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한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 제 13 조 (CD 수익률의 정의 및 산출업무 중단시 비상계획)

- ① 제1조(거래조건)에서 CD수익률이 기준금리로 사용될 경우,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 ②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은 다음과 같다.
1.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대체금리로는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를 사용하기로 한다. 해당 금리는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 공시하는 금리임을 선정 근거로 한다.
  2. 은행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안내하는 조치를 취한다.
  3. 은행은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전화, 메일, 홈페이지 공시등을 통해 안내한다.

#### 제 14 조 (기타 특약사항)

--	--

명 판

법인인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인(명판)

법인인감

연대보증인(명판)

법인인감

수입  
인지